

동 자료는 2010년 10월 6일 19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0. 10.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목 차 >

I. 한·EU FTA 의의	1
II. 한·EU FTA 주요 내용	5
III. 거시경제 효과	12
1. 성장 및 후생수준	12
2. 고용	18
3. 무역수지	21
IV. 산업별 효과	22
1. 제조업	22
2. 농업	33
3. 수산업	39
4. 서비스업	44
5. 보건산업	69
<참고> 경제적 효과 분석 계량화의 한계	73

I. 한·EU FTA 의의

1. 한·EU 경제관계

□ 유럽연합(EU)은 세계 제일의 거대경제권임.

○ EU 총인구는 5억 명이며, GDP는 세계 전체 GDP의 30%인 약 18조 3천억 달러(우리나라의 약 20배)에 달하는 세계 1위의 거대경제권임.

※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GDP는 16조 7천억 달러(2008년)로 EU에 이어 2위

○ EU의 상품교역규모 역시 세계 1위로 2008년 기준 세계 전체 교역의 17.1%(역내교역을 제외한 경우)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14.1%, 중국의 10.4%를 크게 앞서고 있음.

[표 1] 전세계 상품교역 규모(2008년)

	수출 (10억 달러)	수입 (10억 달러)	교역액 (수출+수입) (10억 달러)	비중(%)
EU	1,924.9	2,282.2	4,207.1	17.1
미국	1,287.4	2,169.5	3,456.9	14.1
중국	1,428.3	1,132.5	2,560.8	10.4
일본	782.0	762.6	1,544.6	6.3
캐나다	456.5	418.3	874.8	3.6
한국	422.0	435.3	857.3	3.5
러시아연방	471.6	291.9	763.5	3.1
홍콩	370.2	393.0	763.2	3.1
싱가포르	338.2	319.8	658.0	2.7
멕시코	291.7	323.2	614.9	2.5
전체	12,096	12,449	24,545	100.0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

- 한국과 EU 사이의 교역은 지난 10년(1998~2008년) 동안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률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EU는 2006년 이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교역국으로 부상
- 2008년 기준 한EU 상품 교역액은 약 98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EU 상품교역에서 가장 큰 폭의 흑자(약 184억 달러)를 시현(표 2 참조)
- ※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EU의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상품교역에서 가장 큰 폭의 흑자를 시현(對중국 140.9억 달러, 對EU 78.8억 달러 흑자)

[표 2]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상품교역현황(2008년)

	수출 (억 달러)	수입 (억 달러)	교역액 (수출+수입)	상품 무역수지 (억 달러)
중국	913.9	769.3	1,683.2	144.6
EU	583.7	399.8	983.6	183.9
미국	463.8	383.6	847.4	80.1
일본	282.5	609.6	892.1	△327.0
기타	1,976.1	2,190.4	4,166.6	△214.3
전체	4,220.1	4,352.7	8,572.8	△132.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은 선박과 무선전화기를 비롯하여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이며, 대표적인 수입품은 의약품을 비롯하여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동차부품, 승용차, 정밀화학원료제품 등임(표 3 참조).
- 선박, 무선전화기,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등 10대 주요 수출품이 우리나라의 대EU 전체 상품수출의 63.3%를 차지하면서 이 부문에서 대규모 흑자를 시현
- EU로부터의 수입은 화학(의약품), 자동차부품과 승용차, 정밀기계류가 주를 이루며, 비교적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는 것이 특징
- ※ 농림수산물 전체 수입도 16.8억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의 대 EU 상품 전체 수입에서 5% 이상을 차지

[표 3] 한·EU 간의 10대 교역품목 현황 (2008년)

수출품목	금액 (억 달러)	비중 (%)	수입품목	금액 (억 달러)	비중 (%)
선박	100.2	17.2	의약품	16.1	4.0
무선전화기	74.9	12.8	반도체제조용장비	15.6	3.9
승용차	52.2	8.9	자동차부품	15.5	3.9
평판디스플레이	39.2	6.7	승용차	15.4	3.9
자동차부품	24.0	4.1	기타정밀화학원료	12.3	3.1
직접회로반도체	19.3	3.3	직접회로반도체	12.0	3.0
세트유 및 등유	15.8	2.7	기타화학공업제품	9.5	2.4
경유	15.8	2.7	원동기	9.5	2.4
칼라 TV	14.4	2.5	펌프	8.6	2.1
공학기기부품	13.7	2.3	기타기계류	8.0	2.0
소 계	369.4	63.3	소 계	122.6	30.7
전 체	583.8	100.0	전 체	399.8	100.0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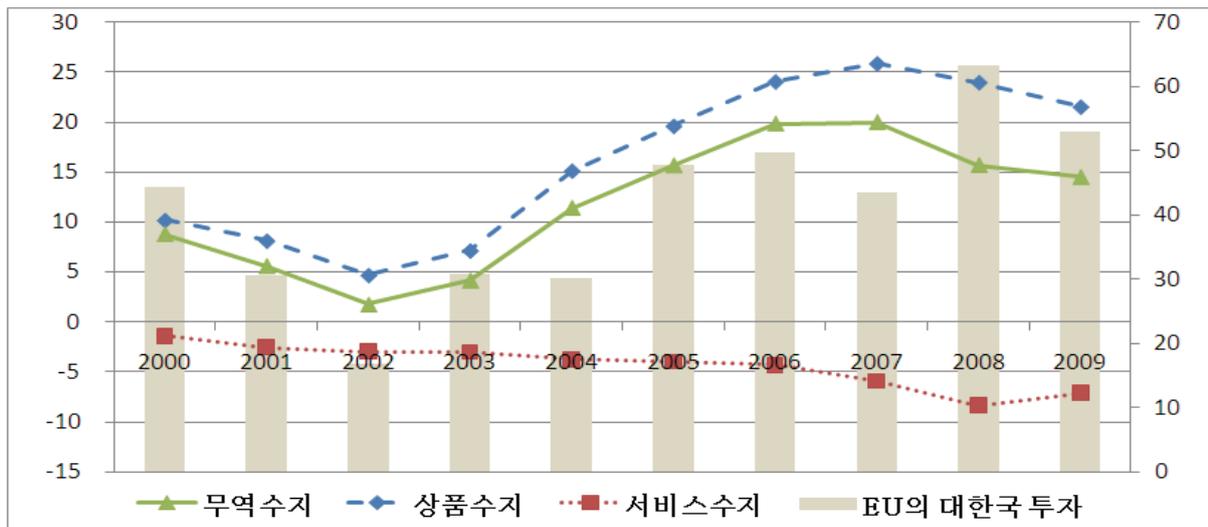
□ 한편 2008년 EU로부터의 투자유입은 63억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의 68%를 차지

- 2002년 17억 달러 규모였던 EU로부터의 투자유입은 2008년까지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
- EU로부터의 투자는 60%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이며 금융, 은행, 보험 부분의 투자가 총투자의 30%를 차지

[그림 1] 한·EU 간의 무역수지 및 투자추이

(왼쪽: 무역수지, 단위:10억 달러)

(오른쪽: 투자, 단위: 1억 달러)



자료: 통계청, 지식경제부

2. 한·EU FTA 의의

-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
 -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상품이 EU시장에서 갖는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 현재 우리나라가 대EU 교역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의 제조업부문은 우리 기업이 일본, 중국, 대만, 아세안 국가들과 EU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분야임.

- 한·EU FTA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67%에 달하나, 국내 총 부가가치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하여 낮은 생산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서비스부문의 개방은 중장기적으로 경쟁과 학습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FTA 선도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음.
 - 현재 동아시아 각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일종의 경합을 벌이고 있음.
 -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로 33개의 FTA를 발효 및 서명, 협상, 제안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중 15개의 FTA가 이미 발효 중에 있음.
 - 중국과 일본은 각각 23개와 20개의 FTA를 발효 또는 추진 중임.
 - 우리나라는 현재 발효 중인 5개의 FTA를 비롯, 23개의 FTA를 추진 중에 있는데, 미국과 EU와 동시에 FTA협상을 체결하게 될 경우, 주변국들에 비해 거대시장에 대한 보다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II. 한·EU FTA 주요 내용

1. 상품 분야

가. 종합

-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즉시 관세철폐 비중은 품목수 기준으로 81.7%이고, 5년 이내 철폐까지 포함하면 품목수 기준으로 93.6% 수준(수입액 기준 97.0%)
- EU의 즉시 관세철폐 비중은 품목수 기준으로 94.0%이고, 5년 이내 철폐까지 포함하면 품목수 기준으로 99.6% 수준(수입액 기준 100%)
- 양측의 예외품목 수는 한국이 44개(품목수 기준으로 0.4%), EU가 39개 (품목수 기준으로 0.4%)

[표 4] 한·EU FTA의 상품 양허표

	한국				EU			
	품목수(개)		수입액(억 \$)		품목수(개)		수입액(억 \$)	
		(%)		(%)		(%)		(%)
즉시 철폐	9,195	81.7	182.7	66.7	9,252	94.0	318.7	76.6
3년 철폐	625	5.5	60.6	22.2	282	2.9	68.6	16.7
5년 철폐	718	6.4	22.2	8.1	269	2.7	28.1	6.8
(5년 이내 총계)	10,538	93.6	265.5	97.0	9,803	99.6	415.4	100.0
7년 철폐	111	1.0	3.6	1.4	-	-	-	-
10년 철폐	399	3.5	3.0	1.1	-	-	-	-
10년 초과	169	1.5	1.3	0.5	-	-	-	-
양허 계	11,247	99.6	273.4	100.0	9,803	99.6	415.4	100.0
양허제외	44	0.4	0.0	0.0	39	0.4	0.0	0.0
전 체	11,261	100.0	273.5	100.0	9,842	100.0	415.4	100.0

주 1) 품목수는 HS 2006, 수입액은 2004~06년 평균 기준

2) 농업셰이프가드, 수입쿼타, 시장진입가격제도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나. 제조업

- 한국과 EU 양측 모두가 양허제외 없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한국은 최장 7년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
 - 품목수 기준으로 3년 이내(즉시 및 3년 철폐)비중이 한국은 95.8%, EU는 99.4%이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1.8%, EU는 93.3%
 - EU에는 없는 7년 철폐 품목 45개(품목수 기준 0.5%, 수입액 기준 1.3%) 확보
 - 순모직물, 건설중장비, 인쇄기계, 합판, 밸브, 의료용전자기기 등 45개 품목

[표 5] 제조업분야 양허 결과

	한국				EU			
	품목수(개)		수입액(억 \$)		품목수(개)		수입액(억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즉시 철폐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3년 철폐	478	5.1	58	22.4	151	2.1	68	16.6
(3년이내철폐)	9,013	95.8	238	91.8	7,352	99.4	386	93.3
5년 철폐	346	3.7	18	6.9	46	0.6	28	6.7
7년 철폐	45	0.5	3	1.3	-	-	-	-
전 체	9,404	100.0	259	100.0	7,398	100.0	414	100.0

주 1) 품목수는 한국은 HS code, EU는 CN code기준
 2) 수입액은 2004~06년 평균

□ 품목별로 보면

- 최대 관심품목인 승용차는 중·대형(1500cc 초과)은 3년, 소형(1,500cc 이하)은 5년 이내 관세 철폐
- 섬유제품, 신발류 관세 대부분을 즉시 철폐하고, 컬러TV(14%)는 5년 철폐

[표 6] 제조업 주요 품목의 양허 결과

	한국	EU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인쇄기계(8), 컬러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컴퓨터부품(8), 항공기부품(3~8), 계측기부품(8) 등	자동차부품(4.5),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직물(8), 남성 셔츠(12), 진공청소기(2.2), 역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자동차(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무선 통신기기부품(8), 안경(8), 선박용엔진 및 부품(8), 의약품(6.5), 화장품(8), 선박용부품(8), 식품가공기계(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 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기타 신발(17),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밸브(8), 하이브리드카(8), 베어링(8),시멘트(8), 윤활유(7), 기초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의료용전자 기기(8), 기타요업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컬러 TV(14), 하이브리드카(10), TV카메라 및 수상기(14), 카스테레오(10), 광학 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모사(8),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 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 기계류(16), 합판(8~12), 섬유관(8), 표면활성제(8), 파티클보드(8), 의료용 전자기기(8), X선 및 방사기기(8), 합성 고무(8) 등	없음

다. 농업

□ 한·EU 양국의 농업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여 비대칭적 개방

-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다양한 양허방식 도입
- EU측은 품목수 기준으로 98.1%, 수입액 기준으로 99.5%를 5년 이내 관세 철폐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한국의 즉시 철폐 농축산물은 품목수 기준으로 42.1%인 610개, 수입액 기준으로 19.5 %수준

○ 반면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거나 현행관세 유지 또는 예외가 적용된 품목은 210개로 품목수 기준으로 14.5%, 수입액 기준으로 8.7% 수준

[표 7] 농업 분야 양허 결과

	한국				EU			
	품목수(개)		수입액(백만\$)		품목수(개)		수입액(백만\$)	
		(%)		(%)		(%)		(%)
즉시 철폐	610	42.1	266	19.5	1,896	91.9	45.3	88.3
2~3년 철폐	17	1.2	244	17.9	10	0.5	0.4	0.9
5년 철폐	278	19.2	380	27.9	119	5.8	5.3	10.3
(5년이내철폐)	905	62.5	890	65.3	2,025	98.1	51.1	99.5
6~7년 철폐	48	3.3	56	4.1	-	-	-	-
10년 철폐 ¹⁾	286	19.7	299	21.9	-	-	-	-
12~15년 철폐 ²⁾	145	10.0	112	8.2	-	-	-	-
15년 초과 ³⁾	10	0.7	0.2	0.0	-	-	-	-
TRQ 부여 ⁴⁾	13	0.9	3.1	0.2	-	-	-	-
계절관세	1	0.1	0.0	0.0	-	-	-	-
양허제외/현행 관세유지	55	3.8	5.9	0.4	39	1.9	0.2	0.5
소계	210	14.5	118	8.7	39	1.9	0.2	0.5
전 체	1,449	100.0	1,364	100.0	2,064	100.0	51.3	100.0

주 1) 10년 철폐 275개와 10년+TRQ 11개 품목을 합한 수치

2) 12, 13, 15년 철폐와 12년+TRQ, 15년+TRQ를 합한 수치

3) 16, 18, 20년 철폐를 합한 수치 4) 현행관세유지+TRQ 계절관세+TRQ를 합한 수치

5) 품목수는 HS 2006 기준, 수입액은 2004~06년 평균 기준

○ 품목별로 보면 쌀은 양허가 제외되었으며, 감귤, 고추, 마늘, 양파, 감자, 대두, 보리, 인삼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며, 전지/탈지분유와 연유, 천연꿀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일정 쿼터를 설정

[표 8]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및 예외, 현행/계절관세 품목(한국)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양허 제외	16	1.1	쌀
현행 관세 유지	25	1.7	감귤, 고추, 마늘, 양파(신선, 냉장, 건조), 감자, 대두, 보리(겉보리, 쌀보리), 인삼(미삼, 본삼, 수삼, 잡삼), 흑설탕 등
현행 관세 + TRQ	12	0.8	전지/탈지 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 TRQ	1	0.1	오렌지
계절관세	1	0.1	포도
15년+TRQ	6	0.4	치즈, 보리(맥주맥, 맥아)
12년+TRQ	6	0.4	보조사료, 변성전분
10년+TRQ	11	0.8	버터, 조제분유, 유장(식용)
20년 철폐	2	0.1	사과(후지), 배(동양배)
18년 철폐	7	0.5	참기름, 참깨, 땅콩, 녹차, 생강
16년 철폐	1	0.1	백설탕
15년 철폐	90	6.2	육우, 젓소, 쇠고기, 계란, 우유, 표고버섯, 주정, 메밀, 송이버섯(조제), 전분류, 녹두, 녹용, 녹각, 대추, 밤, 잣, 호도(미탈각), 키위, 인삼류, 혼합조미료 등
13년 철폐	27	1.9	닭고기(냉동가슴, 냉동날개), 오리고기, 난황, 고구마, 냉동대추, 팥콘용옥수수, 스위트콘(건조)
12년 철폐	16	1.1	고사리, 들기름, 송이버섯(냉동, 건조), 양파(냉동), 멜론, 수박, 혼합주스(포도) 등
10년 철폐	275	19.0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냉장 삼겹살, 목살, 갈비), 감, 양고기, 혼합분유, 발효유, 마요네즈, 잎담배, 강낭콩, 수수, 양배추, 느타리/팽이버섯, 당근, 무, 들깨,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매실, 과일주스, 인조꿀, 레몬, 로얄 제리 등

- EU도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및 수출유망 품목에 대부분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에 대해서 예외를 설정하고, 일부 채소와 과일 제품(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16개)에 대해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라. 수산업

- 농업 분야 양허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EU간 수산업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여 비대칭적 개방

-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 수산물에 대하여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관세 철폐를 확보
 - 냉동오징어(관세 22%), 냉동민어(관세 53%), 냉동명태(관세 30%)는 양허에서 제외하여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냉동고등어와 냉동 기타 넙치의 경우 12년, 냉동볼락, 냉동가자미, 게살, 꽃게 등은 10년의 장기관세 철폐기간 확보
- 반면 EU측은 모든 수산물에 대해 5년 이내 관세를 완전 철폐
 - EU의 즉시 철폐 수산물은 품목수 기준으로 40.8%인 155개, 수입액 기준으로 25.3%, 약 2,160만 달러 수준이며, 냉동 오징어, 게맛 생선목, 기타 냉동어류 등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수산물의 관세가 즉시 또는 3년 이내 철폐(품목수 기준 약 73%, 수출액 기준 95%)
- 한국의 즉시 관세철폐 수산물은 품목수 기준으로 12.3%인 50개, 수입액 기준으로 6.8%, 약 560만 달러 수준
 - 반면 관세철폐 기간이 10년 이상인 품목과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품목은 품목수 기준으로 28.4%인 116개, 수입액 기준으로 28.4%인 약 1,810만 달러 수준

[표 9] 수산업 분야 양허 결과

	한국				EU			
	품목수(개)		수입액(백만\$)		품목수(개)		수입액(백만\$)	
		(%)		(%)		(%)		(%)
즉시 철폐	50	12.3	5.6	6.8	155	40.8	21.6	25.3
3년 철폐	130	31.9	16.7	20.3	121	31.8	59.4	69.7
(3년이내철폐)	180	44.2	22.3	27.1	276	72.6	81.0	95.0
5년 철폐	94	23.0	42.0	50.9	104	27.4	4.3	5.0
(5년이내철폐)	274	67.2	64.4	78.0	380	100.0	85.3	100.0
7년 철폐	18	4.4	0.1	0.1	-	-	-	-
10년 철폐	111	27.2	5.2	6.2	-	-	-	-
12년 철폐 ¹⁾	2	0.5	12.7	15.4	-	-	-	-
현행관세유지	3	0.7	0.2	0.2	-	-	-	-
전 체	408	100.0	82.5	100.0	380	100.0	85.3	100.0

주 1) 12년 철폐와 12년+TRQ를 합한 수치임.

2) 품목수는 HS 2006 기준, 수입액은 2004~06년 평균 기준

2. 서비스 분야

- 한·EU FTA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
-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중 한국은 115개 분야를, EU는 139개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
 - 우리나라의 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양허(코러스 패리티)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이 이루어짐.
 - 전반적으로 전문직(법률·회계·세무) 서비스, 사업·운송·유통·건설·금융 서비스 등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 추가 개방이 이루어진 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와 생활하수 처리서비스는 유예기간(환경은 5년, 통신은 2년)을 확보하고, 생활하수 분야에서는 지자체·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 권한은 유보됨.
- 서비스 협정문은 국경간 서비스공급(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
 -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에서는 양허를 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의 총거래액 또는 자산가액, 영업량 및 총산출량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
 - 내국민대우 원칙하에서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 최혜국대우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하는 의무

Ⅲ. 거시경제 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가. 분석방법

- 한EU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사용
 - CGE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경제 내부주체의 상호의존적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모형임.
- 한EU FTA 협상 결과로 나타난 관세철폐 스케줄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형에 반영

1) 정태모형

- 정태모형은 관세감축에 따른 국내생산 변화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해석될 수 있음. 본 분석에서는 관세철폐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관세의 완전철폐를 가정하고, 5년을 초과하는 품목은 5년 동안에 실제 감축되는 관세감축폭을 계산하여 모형에 대입
 - 농업
 -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관세 감축률 0%),
 - 5년 동안 실제 관세감축 폭을 계산한 결과인 곡물 81.3%, 채소·과일 63.4%, 육류·낙농 59.5%, 가공식품 80.4%, 기타농업 79.5%, 수산업 75.5%의 관세 감축률을 모형에 대입
- ※ 5년 동안 농수산업전체의 수입액 가중평균 관세감축률은 약 74.8%

○ 제조업

- 5년 동안의 실제 관세 감축률인 채취업 99.8%, 섬유·직물 99.9%, 화학·고무·플라스틱 99.1%, 철강·금속 99.6%, 자동차 94.1%, 기타 수송기기 99.6%, 전자 100%, 기계 99.4%, 기타제조업 97.9%를 모형에 대입

※ 5년 동안 제조업전체의 수입액 가중평균 관세감축률은 약 99.2%

○ 서비스업

- 한EU FTA의 서비스 개방은 대부분 한미 FTA에 준하지만 일부에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짐.¹⁾
- 이에 따라 서비스 개방 정도를 모형에 반영해야 하나 이를 수치화 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또한 서비스부문 관세상당치 산정에 다소 무리한 가정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 수준은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음.²⁾

2) 자본축적모형(생산성 증대 미고려)

□ 자본축적모형은 관세감축에 의해 단기적으로 증가된 국내생산 중 일부가 투자되어 생산에 재투입됨에 따라 다시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정태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효과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음. 본 분석에서는 실제 양허결과를 반영하여 쌀과 같이 개방에서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를 모형에 대입.

○ 농업

- 쌀은 제외하였고(관세감축률 0%), 여타 품목은 관세철폐(관세감축률 100%)를 모형에 대입

1) 서비스분야는 대부분 한미 FTA와 개방수준이 비슷하며, 일부 환경서비스에서 추가 개방이 이루어짐. 또한 한미 FTA와 달리 서비스 양허가 Positive List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

2) 실제 서비스 개방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FTA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여지는 있음.

- 제조업: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관세 감축률 100%)를 모형에 대입
- 서비스: 정태모형에서처럼 시장개방 수준을 모형에 반영하지 않음.

3) 자본축적모형(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 EU와 같은 선진 서구경제권과의 FTA 타결로 인해 무역장벽의 완화 이외 기업간 경쟁의 격화, 선진 기술의 이전, 국내 제도 및 규범의 투명화·선진화 등 전반적인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에 생산성 증대효과를 반영

- 관세철폐 스케줄은 생산성 증대 미고려시의 자본축적모형과 동일
- 부문별 생산성증대 shock
 - 농업부문에서도 중장기 생산성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모형에서는 이를 배제
 - 제조업부문에서는 1.2%의 생산성 증대 shock을 줌.
 - 서비스부문은 공공서비스와 비공공서비스(건설, 운송, 사업서비스 등)로 나누고, 추가 개방이 된 비공공 서비스(보건, 교육서비스 등)에 대해서만 1%의 생산성 증대 shock을 줌.

【참고】 생산성 증대효과

-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논의 동향에 따르면 FTA체결로 인해 관세인하 결과 무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경쟁의 심화, 기술협력(이전)의 확대, 제도의 선진화 및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Tybout, de Melo, and Corbo(1991), Iscan(1998), Krishna and Mirta (1995), Harison(1994) 등은 칠레, 멕시코, 인도 등의 실증 사례연구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 정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 제시
 - Lawrence and Weinstein(1999)은 과거 일본과 한국의 생산성 증가의 주 경로가 수입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및 기술투자 유인 확대에 있었음을 제시
 - 특히 CGE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GTAP 모형을 제정한 저명학자인 Hertel 교수도 무역자유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가능함을 지적한 바 있고 (Itakura, Hertel and Reimer(2003)), 아울러 최근 한·호주/뉴질랜드 FTA 공동연구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측에서 생산성 증대효과를 반영하여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 호주가 제시한 CGE 모형(MMC 모형) 결과에 따르면 한호주 FTA를 통한 투자촉진, 서비스교역 자유화가 양국 산업생산성을 증대시켜서 GDP증가를 이끌어 내고, 뉴질랜드가 제시한 CGE모형(CIE-GCubed 모형) 결과도 동태적 생산성증대(Dynamic Productivity Gains)가 GDP증가를 이끌어 냄.
- 본 분석에서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 관련 실증 분석 결과를 근거로 활용
 - 이시욱(2007, KDI)은 “시장개방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1993~2003년 기간중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에 포함된 고용인원 5인 이상 총 15만 여개 개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입관세의 변화가 제조업 개별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5%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음(개방화시대의 한국경제, 차문중편, 2007, KDI)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1988~2005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관세율이 1%p 하락하면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1.2~1.6%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음(시장개방의 생산성향상 메커니즘 분석, 서진교 외, 2008, KIEP)
 - 그 외 산업연구원(2000)은 1996~99년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증가율 1%p 상승시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0.19%p 증가한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원기·김봉기(2003)도 1990~2001년 기간중 제조업 17개 업종에 대한 수입증가효과 분석에서 수입증가율 1%p 상승시 해당 17개 업종의 총요소생산성이 0.11%p 증가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음.
 -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1~2001년 동안 연평균 0.15%로 나타나고 있고(김원규, 2002), CGE모형에 의한 중장기 효과를 약 7~10년 정도로 상정할 경우,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생산성증가가 약 1% 이상임을 의미
- 이와 같은 실증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EU FTA 이행에 따른 중장기적 생산성증대를 반영하기 위해 제조업의 경우 1.2%, 실제 개방이 이루어진 비공공서비스분야에 한해 1%의 생산성 증대 shock을 외생적으로 모형에 투입

1. Harison, A(1994), "Productivity, Imperfect Competition, and Trade Reform: Theory and Evidence," Jour.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6 pp53~73
2. Iscan, T.(1998),"Trade Liberalization and Productivity: A Study of the Mexican Manufacturing Industry," Jour. of Development Studies, Vol. 34 pp123~148
3. Krishna, P and D. Mitra(1998), " Trade Liberalization, Market Discipline and Productivity Growth: New Evidence from India," Jour.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6, pp 447~462
4. Tybout, de Melo, and Corbo(1991), "The Effect of Trade Reforms on Scale and Technical Efficiency: New Evidence from Chile." Jour.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1, pp 231-250
5. Lawrence, and E. Weinstein (1999), "Trade and Growth: Import-Led or Export-Led? Evidence from Japan and Korea", NBER Working Paper No. 7264
6. Itakura, Hertel and Reimer(2003) "The Contribution of Productivity Linkages to th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Free Trade Agreements," GTAP Working Papers 1193, Center for Global Trade Analysi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Purdue University

나. GDP 및 후생수준 효과

□ 한·EU FTA 이행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추가적으로 약 0.1~5.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관세철폐에 따라 단기적(정태모형)으로 교역 증대, 자원배분 효율 개선, 국내생산 증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약 0.1%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적(자본축적모형)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 GDP가 최대 5.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성 증대효과를 반영할 경우 실질 GDP가 약 5.6% 추가 증가하는 것의 해석은 5.6%라는 절대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단순히 관세감축에 따른 효과 보다는 전반적인 무역장벽의 완화를 통해 나타나는 (경쟁의 심화나 기술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산업(기업) 전체의 평균적) 생산성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고, 또한 그것이 관세감축효과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 자원배분 효율 개선, 교역조건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후생수준은 정태모형에서 약 15억 달러, 자본축적모형에서는 39~32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후생수준 효과 약 320억 달러는 2009년 GDP 대비 약 3.8% 수준

[표 10] 한·EU FTA의 실질 GDP 및 후생 효과(누적)

구 분	CGE 정태모형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	0.10	0.64	5.62
후생 수준 (억 달러)	15.1	39.0	320.0

2. 고용

가. 분석방법

- 앞의 CGE 분석 결과 도출된 산업별 생산 증감 결과(KIEP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용효과를 추정
 - 상대적으로 단기효과(0~5년)를 의미하는 정태모형 분석결과와 장기효과(10년~15년)를 보여주는 자본축적모형 분석결과에서 한·EU FTA 이행에 따른 관세철폐(감축)률을 모형에 CGE 모형에 투입하기 이전과 이후의 산업별 생산물 규모의 변화율을 계산
 - ※ CGE모형은 달러가치로 생산물 규모를 추정하고 있어 이를 원화가치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적용되는데, 어떤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원화로 표시된 생산물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산물 규모의 변화율을 이용
 - 2005년 불변가격으로 작성된 한국은행의 2009년 생산 규모에 한·EU FTA발효 전후의 변화율을 적용하면 2005년 불변가격 기준 해당 산업별 국내 생산액의 증감 규모를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가장 최근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7년) 기준 고용계수를 적용하여 생산액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문별 고용규모의 변화를 추산
 - ※ 2005년 불변가격을 사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의한 과대추정을 피할 수 있음.
 - ※ 취업계수가 아닌 고용계수를 사용한 이유는 FT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근로자는 고용주와 피용자이며,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간접적 영향이 있으나, 이는 소득의 증감으로 나타나지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 CGE분석 결과는 이미 모형 내부에서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일반균형모델이므로, 고용유발계수 대신 고용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나. 고용 효과

- 한·EU FTA 이행에 따른 고용규모 변화는 단기적으로 30천명, 장기적으로 48~253천명(이하 모두 누적 개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됨.
- 단기적으로 농수산업부문에서는 약 1,700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는 반면, 제조업에서 4,000개, 서비스업의 경우 27,6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
 - 단기에 농수산업부문에서는 고용감소가 나타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장기에 있어서는 생산성 증대 효과 없이 자본축적만 되는 가정에서는 농수산업부문은 여전히 3,1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조업은 9,400개, 서비스업에서는 4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전체적으로 약 47,8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
- 장기에 전체 산업에서 자본축적과 함께 개방 확대로 생산성이 증대한다면 농수산업에서는 9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제조업의 경우 33,200개, 서비스업의 경우 21만 9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25만 3,100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
 - 장기적으로 농수산업에서는 다른 산업에서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해야만 그 유발효과에 의해 생산물 증가가 나타나고 고용도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전환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첫째 한·EU FTA의 영향이 제조업의 생산액을 증가시키고 이 변화가 다시 서비스업에의 얼마나 큰 생산액 변화를 유발하느냐는 점과 둘째 그 영향이 국내 서비스업에서 얼마나 크게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고용창출의 절대 규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의미
- ※ 정태와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때의 장기에 있어 거시모형의 가정에 따라 서비스업에서 나타나는 고용증대는 시장 개방 효과가 아닌 농수산업과 제조업의 변화에서 오는 유발효과임.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 증대가 없을 때와 생산성 증대가 발생할 경우가 약 4~5배의 고용창출 규모가 차이가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규모 역시 단순 관세인하 보다는 개방 확대에 의한 중장기적 생산성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

[표 11] 한-EU FTA의 고용효과(누적)

(단위 : 천명)

	단기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중장기)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경우
농수산업	△1.7	△3.1	0.9
제조업	4.0	9.4	33.2
서비스업	27.6	41.5	219.0
전체 산업	29.9	47.8	253.1

<고용효과 해석의 주의점>

- 여기서 제시된 고용규모에 대한 영향은 고용변동의 순효과로서 이 추정치는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총규모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음.
- 즉 전체 산업에서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결과일지라도 일자리 창출이 2만개 나타나고 일자리 소멸이 1만개가 된 경우인지, 또는 일자리 창출 3만개와 일자리 소멸 2만개가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또 생산액 변동에 따른 인력수요가 위와 같이 변화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력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추정한 규모만큼의 취업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FTA의 영향에 대응하는 노동정책은 일자리 규모에 따른 변화보다 해당 FTA의 영향으로 퇴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과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양성정책으로 접근해야 함.

3. 무역수지

-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6억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³⁾
 - 대EU 수출은 25.3억 달러 확대되는 데 비해, 대 EU 수입은 21.7억 달러 확대되어 무역수지는 FTA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연평균 3.6억 달러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산업별로 농업과 수산업의 대EU 무역수지가 각각 연평균 3,100만 달러, 240만 달러 적자 확대가 예상되나,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3.95억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표 12] 한EU FTA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

(연평균, 단위 : 백만 달러)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농업	7	38	△31
수산업	10.3	12.7	△2.4
제조업	2,520	2,125	395
계	2,537	2,175	361

3) 무역수지 전망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 개별 부분균형분석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함.

IV.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가. 수출입 증감 효과

1) 분석의 전제와 가정

- 한국과 EU의 품목별(HS 4단위 기준)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을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정
- 품목별로 추정된 수입 가격탄력성과 관세양허안을 활용하여 품목별로 “한국의 대EU 수출증대 효과” 및 “한국의 대EU 수입증대 효과”를 추산
 - 한EU FTA 이행 결과로 나타난 수출입 증가분은 한EU FTA 발효 후 15년간 발생할 증가분의 연평균 수치임. 다만, 제조업분야 관세양허안은 EU의 경우 최장 양허기간이 5년, 한국은 7년으로 되어 있고, 7년 이후의 수출입 증대효과를 계산할 때는 7년 시점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
 - 수출입 증가분을 2004년~06년 3개년 수출입 평균을 기준 연도로 간주 하고 금액으로 환산
- 탄성치 추정에 사용된 시계열자료가 2006년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분석결과는 그 이후에도 이러한 특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
- 한편 개방확대로 인해 제조업부문에서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나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서 지난 수 십 년에 걸친 통합과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생산성 증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워 본 분석에서 생산성 증대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음.

2) 제조업 전체의 수출입 증감 효과

- 한EU FTA가 발효하면 제조업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증가분은 15년 평균 2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EU 수입 증가분은 15년 평균 2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15년 평균 4.0억 달러 증가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한EU FTA는 수출입 모두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는 산업별 수출입 가격탄력성이 EU와의 교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이 주요 원인
 - 반면 무역수지 흑자폭은 수출입 증대 정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EU에 대한 수입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3) 산업별 수출입 증감 효과

- EU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양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수출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섬유, 기계, 석유화학의 순으로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수입효과는 전기전자가 가장 크고,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섬유의 순으로 추산되었음.
- 이에 따라 무역수지 측면에서 자동차의 무역수지 흑자 증대 분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으로 섬유, 석유화학의 순
- 무역수지 적자 효과가 큰 산업은 기계, 정밀화학, 비철금속, 전기전자, 철강의 순

[표 13] 한-EU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 달러)

	수출증가액		수입증가액		무역수지	
	1-5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석유화학	104	108	68	76	36	32
정밀화학	52	53	249	290	△197	△238
섬유	216	216	137	141	79	75
철강	7	7	43	43	△36	△36
비철금속	9	10	41	47	△32	△37
기계	107	116	334	383	△227	△267
전기전자	345	394	391	430	△46	△36
자동차	1,072	1,407	193	217	880	1,189
선박	4	4	16	19	△13	△16
생활용품	66	77	83	93	△16	△16
기타제조업	127	129	345	385	△218	△256
제조업총계	2,110	2,520	1,900	2,125	210	395

주: 2004-06년 평균가격 기준

※ 산업별 수출입효과는 HS 4단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그 이하의 세부 단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관성 있는 품목별 교역자료 획득이 어려웠기 때문임) 추산된 수치의 해석에도 많은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정밀화학의 경우 무역수지가 적자로 나타났으나, 정밀화학을 다시 세분하면 그 하부 산업에서는 무역수지가 흑자인 분야도 존재.

※ 아울러 2006년 까지의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그 이후 나타난 EU와의 무역구조 및 산업별 현지 생산이나 투자 확대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한 수출입 증감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나. 생산 증감 효과

- 관세철폐로 기대되는 산업별 순 수출입 증감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는 FTA 발효 이후 15년 동안 연평균 1조 5천2백억원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7개 업종 중에서 순수출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이 1조 9천억원, 그 다음으로 섬유산업이 1천 1백억원 규모의 생산증대 효과를 기대
 - 관세철폐 결과 적자가 커지는 산업은 동시에 생산이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함. 특히, 기계, 정밀화학 등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표 14] 한-EU FTA 관세철폐의 제조업 생산 증대 효과

(단위: 억원)

	생산 증감 효과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15년 평균
제조업	9,791	17,772	17,718	15,156
석유화학	240	88	86	140
정밀화학	△2,087	△2,693	△2,693	△2,483
섬유	1,152	1,124	1,110	1,124
철강	303	1,087	1,083	842
비철금속	△383	△395	△396	△395
기계	△2,245	△2,564	△2,578	△2,456
전기전자	△73	444	430	273
자동차	14,345	21,951	21,951	19,432
선박	△131	△186	△186	△164
생활용품	276	535	535	453
기타제조업	△1,606	△1,619	△1,623	△1,611
기타	556	1,450	1,439	1,159
합계	10,347	19,222	19,157	16,315

【참고】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의 참고 자료

(산업별 양허안, 수출입 및 관세율 현황, 업종별 수출입 영향)

1. 산업별 양허 수준 비교

가. EU의 양허안(HS 코드로 전환하여 분석)

- EU 양허안을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5년 장기철폐 대상품목은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및 기계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우리의 대EU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장기 철폐 품목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
 - 그러나, 협상 막바지까지 이 품목들이 주로 7년 장기 철폐로 남아 있었던 데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결과

【표 15】 EU의 산업별 양허수준(HS코드 기준)

(단위 : 품목 개수)

	즉시	2년	3년	4년	5년	총계
석유화학	328	0	5	0	0	333
정밀화학	1,819	6	11	0	0	1,836
섬유	1,311	4	0	0	8	1,323
철강	344	0	0	0	0	344
비철금속	290	1	3	0	0	294
기계	1,150	0	16	0	2	1,168
전기전자	1,185	5	10	11	9	1,220
자동차	99	0	48	0	37	184
선박	67	0	0	0	0	67
생활용품	613	19	60	0	0	692
기타제조업	1,633	2	21	0	0	1,656
제조업 총계	8,880	37	174	11	56	9,158

주: EU가 제시한 CN코드 기준 양허내용을 HS코드로 매칭시키는 과정에서 HS 코드 기준 동일 품목안에 CN코드 기준으로 상이한 양허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양허내용에는 없는 2년, 4년 관세철폐 품목들이 상당수 발생하였고, 코드수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에 주의

나. 우리나라 양허안

- 우리나라 양허안은 3년 이하의 조기 철폐를 제외한 5년 이상의 장기 철폐 대상 품목들이 거의 모든 산업들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
 - 다만, 동 협상에서 제조업 가운데 가장 장기적인 철폐 시한인 7년 철폐 대상 품목들의 수는 45개로 제한되었고, 해당 산업들도 기계 (7), 섬유 (5), 화학 (3), 전기전자 (3) 및 비철금속 (1)으로 제한된 결과 (기타 제조업에서 25개 포함)
 - 특히, 협상 막바지까지 양쪽의 신경전이 컸던 자동차 분야는 5년 철폐 품목 49개를 남기고 대부분 조기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결과로서 비교적 적극적인 양허 내용으로 평가 가능

[표 16] 한국의 산업별 양허수준(HS코드 기준)

(단위 : 품목 개수)

	즉시	3년	5년	7년	총계
석유화학	291	14	27	1	333
정밀화학	1,688	102	45	2	1,837
섬유	1,315	3	0	5	1,323
철강	343	1	0	0	344
비철금속	258	19	16	1	294
기계	1,042	90	29	7	1,168
전기전자	1,193	50	14	4	1,261
자동차	113	22	49	0	184
선박	55	11	1	0	67
생활용품	625	57	11	0	693
기타제조업	1,612	109	154	25	1,900
제조업 총계	8,535	478	346	45	9,404

2. 산업별 수출입, 관세율 비교

- 산업별 한, EU 양측의 수출입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EU 수출품은 주로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EU의 대한국 수출은 주로 기계, 화학, 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
 - 따라서 전기전자 및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양측은 상당히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관세율 수준은 EU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EU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양허한 자동차산업의 관세율이 높은 것이 특징)
 - 특히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높은 자동차, 섬유 등의 분야에서 가중평균 수준이 단순평균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

[표 17] 산업별 한국의 수출입 및 양측 관세율 비교(2004-06년 평균기준)

	EU				한국			
	한국 수출		관세율(%)		한국 수입		관세율(%)	
	백만 달러	비중 (%)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백만 달러	비중 (%)	단순 평균	가중 평균
석유화학	706	1.6	3.63	5.65	860	3.3	5.90	6.20
정밀화학	597	1.4	3.10	4.78	3,083	11.9	6.40	6.71
철강	1,274	2.9	6.69	7.54	813	3.1	10.29	10.36
비철금속	980	2.2	0.43	0.48	1,493	5.8	1.56	1.71
섬유	133	0.3	3.16	4.65	682	2.6	6.16	5.25
기계	2,273	5.2	2.04	1.94	3,863	14.9	6.71	7.18
전기전자	19,822	45.2	2.04	1.04	7,191	27.8	5.26	3.45
자동차	9,156	20.9	6.45	9.42	2,049	7.9	8.12	7.87
선박	6,085	13.9	1.30	0.02	301	1.2	4.96	5.82
생활용품	1,123	2.6	3.23	3.97	824	3.2	7.32	7.56
기타제조업	1,672	3.8	2.03	3.54	4,703	18.2	4.48	5.21
제조업계(평균)	43,820	100.0	3.13	3.18	25,862	100.0	6.33	5.44

주: 여기서 EU 부분에 표시한 “한국수출”은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을 표시한 것으로 본문 <표 >에서 EU의 우리나라 수입액(유로화 표시)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음.

3. 주요 제조업 업종별 수출입 영향(15년 연평균 기준)

□ 자동차

- 대EU 수출효과는 연평균 14.1억 달러, 수입효과는 연평균 2.2억 달러
 - 자동차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 증대분은 연평균 11.9억 달러로 예상
 - EU의 자동차 분야 관세율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 수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결과
- 국내업체의 현지생산 확대 및 EU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기대한 수출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
 - 한미 FTA와는 달리 대EU 자동차 수입도 전 차종에 걸쳐 증가할 전망

□ 전기전자

- 대EU 수출효과는 연평균 3.9억 달러, 수입효과는 연평균 4.3억 달러
 - 전기전자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 증대분은 연평균 3,600만 달러로 예상
- 대부분의 전기전자분야 주력 교역품목들이 ITA협정에 의해 무관세화 되어 있으므로 전지전자분야는 현재의 교역량에 비해 수출입효과가 크지 않게 나온 결과
 - 그러나, 非ITA협정품목(디지털가전제품, LCD모듈, 전지 등)은 EU 시장에서의 對일·對중 가격경쟁력 제고 예상
 - 단, 중전기기 및 일부 전자부품 등은 EU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피해 발생 가능성

□ 섬유

- 대EU 수출효과는 연평균 2.2억 달러, 수입효과는 연평균 1.4억 달러
 - 섬유산업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분은 연평균 7,500만 달러로 예상

- EU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출증대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결과
- EU가 운용하고 있는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기대되는 수출증대 효과를 확보하는 관건
-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과제

□ 화학

- 석유화학은 소폭의 흑자 증대 기대, 그러나 정밀화학은 기계산업 다음으로 큰 적자 증대가 예상되는 분야
 - 석유화학 연평균 3,200만 달러 흑자 (수출 1.1억 달러 증가, 수입 0.8억 달러 증가)
 - 정밀화학 연평균 2.4억 달러 적자 (수출 0.5억 달러 증가, 수입 2.9억 달러 증가)
- EU가 상대적으로 강한 정밀화학 분야에서 FTA 체결의 결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전환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
 - 석유화학분야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EU의 공급부족을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

□ 일반기계

- 대EU 수출효과는 연평균 1.2억 달러, 수입효과는 연평균 3.8억 달러
 - 대EU 무역수지 적자 증대분은 연평균 2.7억 달러 전망
- 일본, 미국 등 기존 수입선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효과 기대
 - EU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전용 설비 및 기계류 등이나 머시닝 센터, NC 선반 및 연삭기 등의 범용설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

- 우리나라는 주로 건설 중장비, 공작기계, 냉동 공조기계 분야에서 수출을 증대시킬 가능성
 - 다만, EU의 기계분야에 대한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

□ 철강 및 비철금속

- 한EU FTA의 결과 적자 증대가 예상되는 분야: 연평균 철강 3,600만 달러, 비철금속 3,700만 달러
 - 철강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들이 다자간 철강협정의 결과 무관세로 교역되는 상황이나, 주단조강 등 관세가 남아있는 분야에서는 수입 증대 예상
 - 비철금속의 경우, 고급 소재 등 EU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적자 증대의 주원인
- 양 산업에서 EU 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
 - 다만, 비철금속의 경우 급격한 구조조정도 나타날 가능성

□ 생활용품

- 소폭의 적자 증대가 예상되는 분야: 연평균 1,600만 달러 수준
 - 대EU 수출 증가 7,700만 달러, 대EU 수입 증가 9,300만 달러 증가 전망
- 수출증대가 크게 나타날 분야는 자동차 타이어 및 신발
 - 반면에 보석 및 귀금속, 악기 등의 분야에서는 수입증대를 예상

[표 18] 산업별 연차별 수출입 증대 효과

	수출증가액				수입증가액				무역수지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15년 평균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15년 평균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15년 평균
석유화학	104	110	110	108	68	80	80	76	36	30	30	32
정밀화학	52	53	53	53	249	311	311	290	-197	-258	-258	-237
섬유	216	216	216	216	137	142	143	141	79	74	73	75
철강	7	7	7	7	43	44	44	43	-36	-37	-37	-36
비철금속	9	10	10	10	41	49	49	47	-32	-39	-39	-37
기계	107	120	120	116	334	407	408	383	-227	-287	-288	-267
전기전자	345	418	418	394	391	449	450	430	-46	-31	-32	-36
자동차	1,072	1,574	1,574	1,407	193	230	230	217	879	1,344	1,344	1,190
선박	4	4	4	4	16	21	21	19	-12	-17	-17	-15
생활용품	66	82	82	77	83	98	98	93	-17	-16	-16	-16
기타제조업	127	130	130	129	345	405	405	385	-218	-275	-275	-256
제조업총계	2,110	2,725	2,725	2,520	1,900	2,235	2,239	2,125	210	490	486	395

2. 농업

가. 영향대상 품목

□ 분석 대상품목은 협상내용과 기존 교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곡물

- 쌀은 양허에서 제외되었고, 식탁용 감자는 현행관세 유지로 합의 되었으므로 분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였음.
- 대두는 채유용 및 박용은 관세를 철폐하지만 우리나라 국산콩의 주요 용도인 식용에 대하여는 현행관세 유지. 식용대두는 유전자조작이 아닌(Non-GMO) 것을 수입하며,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는 미국과 중국산이 80% 이상을 차지. 따라서 대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맥주보리와 맥아는 관세감축 외 TRQ를 증량하기로 합의. 그러나 EU산 맥주보리는 경쟁력이 낮고 현재 국내산 맥주보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입증가와 그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한편 감자전분 수입 증가로 인한 감자의 생산액 감소 예상

○ 채소

- 고추, 마늘, 양파는 현행관세 유지로 합의되어 파급영향 분석에서 제외
- 생강, 파 등 기타 주요 채소류는 EU로부터 수입실적이 없으며,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과일

- 사과, 배는 관세철폐 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이며, 현재 EU로부터의 수입이 없는 상태. EU산 사과와 배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낮기 때문에 EU와의 FTA로 인한 추가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현재 미국이 EU로 사과와 배를 수출하고 있으나, EU가 미국으로 사과, 배를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EU의 딸기는 대부분 생식용이 아닌 가공용(케익용 등)으로 재배되고, 당도도 낮아 우리 소비자의 입맛과는 거리가 있어 수입 가능성은 거의 없음. 또한 유럽의 가공용 품종 딸기가 현재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어 중국에 비해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
- 오렌지는 스페인산이 수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품질이 낮고, 수입이 된다고 해도 병해충 문제 등으로 매우 낮은 온도(섭씨 0도 수준)로 저장·운송해야 하고, 이 경우 품질 저하로 미국산과의 경쟁에서도 뒤질 것으로 판단(일본시장에서도 스페인산은 거의 도태)

○ 축산

- 쇠고기는 미국과 호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며, EU로부터 수입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가격경쟁력에서도 미국과 호주가 EU에 비해 높으며, 품질면에서도 EU산이 경쟁국에 뒤지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EU는 돼지고기와 낙농품에 있어서 경쟁력이 높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실적도 좋아 FTA로 인한 수입 증가가 예상

□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한EU FTA 농업부문의 수입영향 평가 대상 품목으로 곡물류에서 감자 전분, 축산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과일과 과채부문에서는 포도(가공), 키위, 토마토(가공) 등을 선정

[표 19] 한·EU FTA 농업부문 수입영향 분석 선정품목

(단위: 억원)

구분	품목	양허 관세율 (%)	국 내 생산액 (04-06평균)	대 EU 수입액 (04-06평균)	양허안
곡물	감자 전분	455	2,303 ¹⁾ (0.6%) ²⁾	221 (99.2%) ³⁾	15년 철폐
축산	돼지고기	25	36,782 (10.1%)	2,893 (50.9%)	냉동 및 냉장 삼겹살 10년, 기타 5년 철폐
	닭고기	20	11,302 (3.1%)	333 (43.1%)	13년 철폐
	낙농품	36	15,293 (4.2%)	832 (27.5%)	현행관세 유지, TRQ, 10년, 15년 철폐 등
과일 과채	포도(가공주스)	45	6,060 ⁴⁾ (1.7%)	88 (39.1%)	즉시 철폐
	키위(신선)	45	320 (0.1%)	0 (0.0%)	15년 철폐
	토마토	45	614 (1.7%)	49 (16.4%)	7년 철폐

주 1) 신선 감자 생산액임.

2) 국내 전체 농림업생산액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3) 전체 수입액에서 EU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4) 신선 포도 생산액임.

나. 생산 증감 효과

□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탄성치를 이용한 계산 방식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모형인 KASMO를 이용하여 분석

- 양허 내용과 양국 간 교역실적 등을 고려할 때 미미한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정성적 분석에 바탕을 둔 탄성치를 이용한 계산 방식으로 추정
- EU와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에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은 축산부문으로 이러한 피해는 쇠고기 등의 축산부문 뿐만 아니라 경종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이러한 과급영향을 예측하고자

KREI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⁴⁾ 모형을 이용하여 축산부문의 파급영향은 물론 이로 인한 농업부문 전체(곡물류, 채소류, 과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표 20] 한·EU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 감소액 추정 결과

(단위: 억원)

품목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감자 전분	0	14	28	0	8	23
돼지고기	556	1,214	1,214	328	943	1,214
닭고기	161	277	331	105	231	319
낙농	97	419	805	40	277	651
포도(가공주스)	32	32	32	32	32	32
키위	30	52	70	18	43	63
토마토(가공)	38	54	54	23	52	54
쇠고기	121	394	526	58	279	501
계	1,035	2,456	3,060	604	1,865	2,857

주: 1) 15년 이전 이행 완료품목은 15년차 합계를 위해 이행 완료시점 피해액을 15년까지 연장
 2) 축산부문 생산액 감소는 KASMO모형의 결과임. 기타 품목은 정성적 분석 및 탄성치를 이용한 분석 결과임(품목별 중간 수준의 탄성치를 적용)
 3) 쇠고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증가로 인한 대체수요요인에 의한 것으로 15년차는 닭고기 이행을 완료되는 13년차의 결과를 연장하여 제시

- 모형분석 결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한우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 교차탄성치 등 각종 계수의 중간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요 8개품목의 최종연도의 생산액 감소규모는 3,060억 원 수준으로 예상(표 20)
 - 이 가운데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2,876억 원으로 전체의 94.0% 차지

4)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개발한 모형으로 재배업 40개, 축산업 5개 등 총 45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

다. 수출 증감 효과

- EU와 FTA체결에 따른 관세철폐시 농산물 품목별 수출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15개 주요 품목⁵⁾에 대하여 수출수요함수를 추정. EU 회원국 2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 15개 주요 수출품목이 전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05년 평균 78% 수준(표 21 참조)

[표 21] 분석대상 품목 대EU 수출 추이

(단위: 천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산물수출액	31,680	27,853	31,059	34,031	45,528	46,452
분석대상 품목 수출액	25,282 (79.8)	24,499 (88.0)	26,362 (84.9)	29,177 (85.7)	40,195 (88.3)	20,097 (43.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FAOSTAT(faostat.fao.org)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가격, EU 농산물 가격,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의 EU 수출 가격, EU의 소득, 환율을 기본으로 하는 양대수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 주요 품목의 수출 증대 효과는 최근평균 수출실적 기준 약 700만 달러 (약 100억 원), 최대 수출실적 기준 약 5,000만 달러(약 700억 원)로 추정됨.

5) 사과, 배, 기타조제채소, 비알콜음료, 커피추출물, 간장, 곡물조제식료품, 조제식료품기타, 마카로니, 담배(비조제품), 권련, 조주정, 면웨이스트, 페이스트리, 설탕과자류임.

[표 22] 한-EU FTA에 따른 대EU 수출증가 효과 추정 결과

품목	관세 (%)	수출액(천 달러)			수입 수요 탄성치	가격 변화율 (%)	수출 변화율 (%)	수출증가액 (천 달러)		
		최고치	전체 평균1)	최근 평균1)				최고치	전체 평균	최근 평균
사과	20.2	389	181	87	-0.88	-16.8	148	57.6	26.8	12.9
배	10.4	1,406	413	994	-3.45	-9.4	32.5	456.4	134.2	322.6
기타조제채소	17.6	683	407	542	-0.25	-15.0	3.7	25.4	15.1	20.1
비알콜음료	9.6	611	295	461	-0.19	-8.8	1.6	10.1	4.9	7.6
커피추출물	9.0	4,367	1,287	1,353	-0.38	-8.3	3.2	138.0	40.7	42.7
간장	7.7	417	243	283	-0.38	-7.1	2.7	11.3	6.6	7.7
곡물조제식료품 ²⁾	18.0	2,142	453	459	-1.70	-15.3	26.0	557.7	118.0	119.4
조제식료품기타	12.8	11,411	6,821	11,187	-0.14	-11.3	1.6	182.5	109.1	179.0
마카로니 ²⁾	26.9	1,572	624	1,201	-2.18	-21.2	46.4	728.9	289.3	556.7
담배 ²⁾ (비조제품)	26.8	50,219	8,054	5,898	-4.50	-21.1	95.2	47,785	7,663.3	5,611.8
권련	10.0	2,057	843	489	-1.60	-9.1	14.6	299.6	122.7	71.3
조주정	0	1,407	493	544	0.00	0.0	0.0	0	0	0
면웨이스트	0	4,571	2,693	2,308	-0.23	0.0	0.0	0	0	0
페이스트리 ²⁾	18.0	1,239	659	745	-1.92	-15.3	29.3	362.4	192.7	218.0
설탕과자류 ²⁾	18.0	8,069	2,881	1,815	-0.58	-15.3	8.8	713.6	254.8	160.5
합계		90,560	26,347	28,366				51,328	8,978	7,330

주: 1) 전체평균은 1991~2005년, 최근평균은 2003~05년 평균임.

2) 곡물조제식료품, 마카로니, 담배 등의 혼합세는 종가세로 환산.

3. 수산업

가. 분석 방법 및 한계

□ 생산 감소

- 관세하락에 따른 국내 수산업분야의 생산 감소는 수입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생산감소(가격효과)와 EU산의 국내산 대체로 인한 생산감소(대체효과)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대체효과는 EU산이 국내산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EU산이 EU 이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산을 대체하는 점도 동시에 고려
 - 가격하락 효과는 국내 생산량에 대비 EU산 수입증가량의 비중이 클 수록 국내가격 하락요인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 수출입 증대

- 일반 산업분야의 경우 FTA 체결에 따른 효과 분석에 있어서 일반균형 모형(CGE)에 입각하여 예측할 수 있으나, 수산분야에서는 자료의 제약과 통계 미비로 인해 품목별(HS코드 기준) 부분균형모형에 기초하여 분석
 - 품목별 수출입 가격 탄력성과 한EU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양허안을 기초로 수출입 증대 효과를 예측

□ 분석의 특징 및 한계

-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통계 미 집계 및 국내 생산과의 연계 불가로 분석 대상에 반영되지 못함

나. 양국간 수산물 교역 현황

- 2007년 한국의 對EU 수산물 수출은 200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한 후 2008년에는 소폭 감소
 - 반면 2007년 수입은 2006년에 비해 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수출과 마찬가지로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소폭 감소

[표 23] 한국과 EU의 수출입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6		2007		2008		3년 평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28,242	55,846	44,834	107,251	32,742	95,479	35,273	86,192
수입	20,055	84,569	15,346	88,769	15,813	88,422	17,071	87,253

자료 : 관세청

- 한국의 대 EU 주요 수산 수출품은 황다랑어(냉동), 오징어(냉동), 기타 어류(냉동) 등임. 특히 황다랑어(냉동)의 경우 2006년 수출이 280만 달러에서 2007년 2천 9백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
 - 반면 생선묵(게맛)은 1천 1백만 달러(04~06평균)에서 6백만 달러(06~08년 평균)로 크게 감소

[표 24]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품목(2006~08년 평균기준)

HS코드	품목명	물량(톤)	금액(천 달러)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7,433	14,191
0307491020	오징어(냉동)	5,263	13,392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9,743	11,774
0304299000	기타피레트(냉동)	701	7,068
1604204010	생선묵(게맛)	2,868	6,403

자료 : 관세청

- 한국이 EU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은 골뱅이(기타조제),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참다랑어(냉동) 등으로 특히 참다랑어 피레트(냉동)의 경우 1천 1백만 달러(04~06년 평균)에서 2천 2백만 달러(06~08년 평균)로 급증
- 반면 주요 수입 품목인 고등어(냉동)의 경우 250만 달러(06~08년 평균)로 급감

[표 25] 한국의 대EU 주요 수입품목(2006~08년 평균기준)

HS코드	품목명	물량(톤)	금액(천 달러)
1605909030	골뱅이(기타조제)	3,321	28,102
0304295000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475	22,105
0303450000	참다랑어(냉동)	347	8,503
2301201000	사료용 어분	5,567	7,404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조제저장, 밀폐제외)	641	4,174

자료 : 관세청

다. 생산 감소 효과

□ 수산물 관세 인하는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 가격의 하락 및 생산 감소를 유발

※ 한EU FTA 양허결과에 따른 품목별 수입 증대와 대체효과 및 가격효과를 고려하여 추정

- 대상품목은 대EU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정
 - 분석어종은 총 16개로 참다랑어, 골뱅이, 넙치 등임.

1) 어업별 생산 감소

□ 협상 타결로 인한 수산분야 생산 감소액은 1,525억원으로 5년차까지는 연평균 68억원, 10년차에는 102억원, 15년차에는 112억원으로 증가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일반해면어업으로 연평균 42억원의 생산 감소 전망

- 다음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영향이 커 연평균 27억원의 생산 감소 전망

[표 26] 어업별 생산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1~5년	6~10년	11~15년	15년 합계	15년 평균
합 계	6,863	10,224	11,166	141,265	9,418
일반해면	2,712	4,758	5,264	63,668	4,245
천해양식	1,548	2,259	2,649	32,280	2,152
원 양	2,363	2,825	2,871	40,293	2,686
내수면	240	382	382	5,023	335

주 : 생산감소액은 이행기간 완료 이후에도 15년차까지 생산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2) 어종별 생산 감소

-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넙치류, 참다랑어류, 골뱅이, 볼락류의 순임

[표 27] 어종별 생산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1~5년	6~10년	11~15년	15년 합계	15년 평균
합 계	6,863	10,224	11,166	141,265	9,418
넙치류	1,911	2,743	3,198	39,257	2,617
참다랑어류	1,761	1,957	1,957	28,371	1,891
골뱅이	739	1,157	1,157	15,265	1,018
볼락류	612	1,120	1,248	14,897	993
기타연체동물	588	935	935	12,288	819
기타	1,252	2,314	2,672	31,186	2,079

주 1) 생산감소액은 이행기간 완료 후에도 15년차까지 생산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2) 기타연체동물에는 주로 기타패류가 해당됨

라. 수출입 증감 효과

1) 수출 증감 효과

- 한EU FTA 체결 및 양허결과에 기초하여 품목별 수출수요함수 추정 결과와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율을 고려하여 추정

- 15년 합계는 1억 5천 538만 달러로 추산되며, 15년차까지는 연평균 1천 36만 달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품목별로는 황다랑어(냉동), 생선묵(게맛), 기타어류(냉동) 등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표 28] 품목별 수출 증가액

(단위: 천달러)

구 분	1~5년	6~10년	11~15년	15년 합계	15년 평균
합 계	8,607	11,235	11,235	155,383	10,359
황다랑어(냉동)	1,072	1,697	1,697	22,335	1,489
생선묵(게맛)	1,033	1,664	1,664	21,806	1,454
기타어류(냉동)	1,050	1,050	1,050	15,747	1,050
기타피레트(냉동)	705	1,133	1,133	14,856	990
바지락(밀폐)	779	955	955	13,441	896
기타	3,967	4,736	4,736	67,197	4,480

주 1) 2006~2008년 3년 평균 對EU 수출 품목 중 10만 달러 이상의 품목 기준임

2) 15년 이전에 양허가 완료되는 품목들은 15년까지로 연장하였음

2) 수입 증감 효과

□ 한EU FTA 양허결과에 따른 경우 연평균 1천 273만 달러의 수산물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1~5년차까지 평균 963만 달러, 6~10년차까지는 평균 1천 367만 달러, 11~15년차까지는 1천 488만 달러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품목별로는 골뱅이(기타조제), 기타넙치(냉동),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등 품목들의 수입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

[표 29] 품목별 수입 증가액

(단위: 천달러)

구 분	1~5년	6~10년	11~15년	15년 합계	15년 평균
합 계	9,634	13,669	14,875	190,889	12,726
골뱅이(기타조제)	2,991	4,754	4,754	62,493	4,166
기타넙치(냉동)	1,778	2,613	3,481	39,361	2,624
참다랑어피레트(냉동)	2,167	2,683	2,683	37,664	2,511
참다랑어(냉동)	1,125	1,125	1,125	16,870	1,125
기타연체동물(밀폐제외)	444	706	706	9,282	619
기타	1,129	1,789	2,126	25,219	1,681

주 1) 2006~08년 3년 평균 對EU 수입 품목 중 10만 달러 이상의 품목 기준

2) 15년 이전에 양허가 완료되는 품목들은 15년까지 연장하였음

4. 서비스 부문

가. 서비스 부문 주요 협상결과

□ 서비스는 크게 협정문 협상 결과와 양허안 협상결과로 구분 가능

- 서비스 협정문은 국경간 서비스공급(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
 -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에서는 양허를 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의 총거래액 또는 자산가액, 영업량 및 총산출량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
 - 내국민대우 원칙하에서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 최혜국대우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하는 의무
- ※ 다만 EU가 WTO체제에서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지역무역협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혜국대우에 있어서 예외조항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협정문에서는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은 최혜국대우 의무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
- 서비스분야 양허안 협상 결과,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으로 총 139개 분야를,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를 개방하기로 합의

< 단기적으로 국내 서비스시장 잠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EU와의 FTA를 통해 서비스개방에 나서는 주요 이유>

□ 서비스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

○ 국내 서비스 업계는 규모가 영세하고,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규모의 경제실현 등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구조

- 서비스 시장개방은 단기적으로는 선진 전문 외국 서비스업체의 국내 진입으로 국내 서비스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제조업과 달리, 영업형태, 노하우 등에 있어서 빠른 습득과 성장이 가능한 만큼, 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서비스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음

□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통해,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기타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특히 규제로부터 유래되는 렌트(rent)를 줄임으로써 보다 적은비용으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은 수출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음.

□ 경제구조의 효율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추구

○ 과거 우리나라는 고숙련·저임금을 바탕으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후발 산업국가로부터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시작으로 경제구조의 효율성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할 필요가 대두

□ 서비스 산업의 개방은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여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개혁 정책과 동일선상의 정책임.

○ 외환위기 이후 개방이 진행되어 온 금융산업이 대표적인 예이며, 한편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상당 부분의 서비스산업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개방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

나. 문화/관광

1) 협상 주요결과

① 공동제작부문: 문화협력의정서

□ 시청각분야는 서비스·설립 챕터 적용에서 배제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문화협력의정서에서 규정

○ 의정서 상의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제작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투자제작된 시청각물은 공동제작물로 인정이 되며 우리나라와 EU회원국 간 공동제작물에 대해 각국에서 시장접근 관련 제도상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 부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및 EU 제작물로 인정하여 각 당사자의 시장접근 관련 제도상의 혜택 부여

- (애니메이션)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의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인 경우

- (영화 등 기타 시청각물) EU 회원국 2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0% 이상인 경우.

※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각 10% 이상이어야 함

○ 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전문가 및 공연자 등에 대한 입국 및 체류 원활화 이들의 훈련과 지속적인 접촉을 위해 노력

- 입국 및 체류는 1년에 90일까지 허용됨

[표 30] 문화협력의정서 주요 내용

주요 쟁점		협상 결과
의정서 발효시기		· 한·EU FTA 발효시 의정서가 FTA 일부로 발효
목적		· 한-EU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분야 협력의 틀 구축
문화협력위원회 및 국내자문단그룹		· 통상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위원회로서 문화협력위원회 설립 · 문화 및 시청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자문단그룹 설치
공동제작인정기준	EU측 최소참여국 수	· 애니메이션 : 3개국, · 기타시청각 : 2개국
	양 당사자의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	· 애니메이션 : 35%이상 · 기타시청각 : 30%이상 ※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10%이상이어야 함
	제 3자 참여	·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 2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부여기간		·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 · 일방이 만료 전 서면통보 않는 한 자동연장 · 문화협력위원회가 혜택부여에 대한 이행결과를 평가
법령변경시 혜택 정지 조치 관련		· 법령변경으로 공동제작물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일방은 두달 전 통보하고 혜택부여정지 가능 - 정지 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법령변경의 성격 및 영향을 토론 및 검토

② 저작권 부문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장하되 적용시점은 한-EU FTA 협정문 발효 2년 후에 적용
 -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은 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WCT, WPPT 등)에서 정하는 기간을 적용하는 수준에서 타결
 - ※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 기산점이 EU지침과 우리 저작권법 규정이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저작자에 한해서 보호기간 70년을 적용하기로 함.

2) 경제적 효과

① 공동제작부문의 경제적 효과

□ 분석방법

- 한EU간 공동제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콘텐츠의 주요 장르 중 영화, 애니메이션 부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되, 애니메이션의 경우 흥행 이후에는 부수적으로 캐릭터가 수출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제적 효과 부문에 포함
- 공동제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05년 산업연관표상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등과 공동제작에 따른 수출 증감액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
 - 생산에 미치는 영향
=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추가적 수출증감액)×(2005년 산업연관표 문화서비스부문 생산유발계수(1.90))
 - 소득에 미치는 영향
=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추가적인 수출증감액)×(2005년 산업연관표 문화서비스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0.85))
 -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추가적인 수출증감액)×(2005년 산업연관표 문화서비스부문 고용유발계수(13.4명/10억원))
-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추가적 수출 증감액은 영화/애니메이션/캐릭터의 유럽수출 비중이, 2010~14년간 5%, 2015~19년간 7%, 2020~24년까지 10%씩 각각 더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 영화와 애니메이션 수출액은 판권수익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극장이나 TV에서 상영되는 수익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영화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평균 영화수출 증감률을 계산/적용하여 향후 수출액을 추계하였으며,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총 수출액 중 유럽수출 비중을 추출하여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추가적인 수출증가분을 추산하였음

- 공동제작 협정체결로 현지업체를 통한 방송 및 유통망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유럽 공동제작사의 투자유치를 통한 제작비를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제작 편수 증가효과도 있을 것을 고려하여, 유럽시장으로의 수출비율이 5%, 7%, 10%씩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분석 결과

- EU 27개국과의 영화/애니메이션분야 공동제작협정은 연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연평균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평균 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
- 특히 아동용 TV 애니메이션시장에서 유럽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들 아동용애니메이션에 강한 국내업체의 적극적인 유럽진출이 예상되며, 애니메이션의 흥행은 캐릭터 저작물 사용의 증가로 인한 수익 증대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됨

[표 31]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평균, 단위: 억원, 명)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2010-2014)	(2015-2019)	(2020-2024)
생산유발효과	102.5	46.5	85.6	175.5
부가가치유발효과	45.8	20.8	38.3	78.5
고용유발효과	72.3	32.8	60.4	123.7

② 저작권부문의 경제적 효과

□ 분석 방법

- 분석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출판저작물 및 음악저작물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기간은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됨으로써 향후 20년간의 추가적인 저작권료 지불 분을 분석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한-EU FTA가 발효된 후 2년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2010년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예를 들어, 2010년이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51년차가 되는 경우,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았던 저작물이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들어감.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추가가 되면 동 저작물은 2029년까지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출판/음악 저작물
 - 우리나라의 연도별(2010~29년) 저작권료 총지출규모에 보호기간이 연장(20년)되는 저작물 비중을 곱하여 해외에 지불할 추가저작권료 산정

□ 분석 결과

- 출판·음악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됨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

[표 32]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 해외 지불 비용

(연평균, 단위: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10-2014)	(2015-2019)	(2020-2024)	(2025-2029)
출판	21.3	7.3	28.9	29.3	25.8
음악	0.5	0.1	0.4	0.6	0.7
합계	21.8	7.4	29.3	29.9	26.5

주: 연간 할인율 3% 적용하여 실질 가치화하였음

① 출판 저작물

□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2010~29년까지 20년간 지불해야 하는 연평균 저작권료는 21.3억 원이며, 각 5년간 연평균 저작권료는 아래와 같음.

- 2010~14년간 연평균 7.3억 원, 2015~19년간 연평균 28.9억 원, 2020~24년간 연평균 29.3억 원, 2025년~29년간 연평균 25.8억 원으로 전망

② 음악 저작물

□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음악 저작권료는 2010~29년까지 20년간 연평균 5천만 원이며, 각 5년간 지불해야 하는 연평균 저작권료는 아래와 같음

- 2010~14년간 연평균 1천만 원, 2015~19년간 연평균 4천만 원, 2020~24년간 연평균 6천만 원, 2025년~29년간 연평균 7천만 원으로 전망

다. 통신

1) 협상 주요결과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49% 지분제한을 그대로 유지 하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간접투자의 형태로는 100%까지 허용 (유예기간 2년)
 - 단 핵심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와 SKT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므로 KT와 SKT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 지분의 변화 발생
-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 중 방송중계 부문에 한해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협약 체결 면제(유예기간 2년)
 - 상업적 협약 체결 면제 대상은 위성을 이용하여 TV 또는 라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방송사간 중계링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정 하고, 위성을 이용한 국내 지점간 연결서비스는 제외하여 국내 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

2) 경제적 효과⁶⁾

① 분석을 위한 가정

- KT와 SKT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투자비중 기준 약 25.5%)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지분의 변화 발생
 - KT와 SKT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 중 외국인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LG계열 통신사이나, LG그룹이 이를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수익을 노린 재무수익추구형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으며, 정부가 재무수익추구형 투자를 억제하는 다양한 통신정책을

6) 분석방법은 ① 통신서비스시장의 이론적 분석모형을 이용해 시장균형 및 균형가격을 도출한 후, ② FTA 발효후 새로운 시장균형 및 균형가격수준을 구해 ①의 결과와 비교한 뒤 이로부터 관세상당치 도출, ③ 도출된 관세상당치를 CGE모형에 적용하여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

추가할 수 있어 향후 외국인투자를 장기투자형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가정

-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효과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FTA 발효 3년차부터 발생하여 FTA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균형이행기간은 1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모형에서 도출된 효과는 장기효과로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금액기준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통신서비스(방송제외) 매출액 증가율을 연 3.31%(2005~08년 연평균 증가율 및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감소 효과 반영)를 가정하고, 실질GDP 증가율은 2011~20년간 연 2.1%(<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의 추정증가율을 기초로, 최근 세계경제위기 영향을 반영)로 가정

② 경제적 효과

- 향후 15년간 통신서비스부문 설비투자는 0.6%증가(2007년 기간통신사업자 설비투자액 7조 2,348억원 기준 약 434억 원), 통신서비스 균형가격은 0.35% 감소
 - 정부의 통신정책 하에, 통신망 투자 및 기술혁신을 동반한 장기투자형 외국인 지분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투자증가 및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예상
 - 외국인에 의한 간접지분제한 철폐로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해 투자를 하거나, 외국인이 인수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
 - 외국인 인수기업에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기존 국내회사의 경쟁력(한계비용)을 외국회사 만큼 높이기 위해 추가투자 하기 때문

- 외국기업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국내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쟁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함
- 한-EU FTA에 따른 기간통신서비스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효과와 위성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의 부분개방효과의 결과, 향후 15년간 통신서비스 매출은 0.08% 증가하고 이로 인한 GDP 파급효과는 0.007%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금액으로는 평균 통신서비스 불변가격 기준 매출액 584억원, 소득은 255억원 증가 예상
- FTA 체결에 의해 특히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으로는 국제전용회선(주로 기업고객 대상)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들 수 있음.
-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 중 방송 중계 부문에서의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협약 체결의무 면제에서 국내 지점간 국내 위성 전용서비스가 제외됨에 따라 국내 산업 단기 피해 규모는 제한적이고, KT의 무궁화 위성 사업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 중 방송중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 '08년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중 방송중계부문 매출액은 약 82억원 규모로 전체 국내 위성통신서비스시장(1,305억원)의 약 6%를 차지함
- 방송은 금번 한-EU FTA에서 개방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표 33] 한EU FTA체결에 따른 통신서비스부문 거시경제적 효과

(단위: %, 억원)

	1~5년 평균	6~10 년 평균	11~15년 평균	1~15년 평균	5년차 누적치	10년차 누적치	15년차 누적치
추가 생산 증가율(%)	0.0096	0.0487	0.0313	0.0299	0.0240	0.0654	0.0824
FTA비체결시 실질생산액	513,611	604,431	711,309	609,784	547,594	644,423	758,372
FTA 체결시 실질생산액	513,661	604,713	711,846	610,073	547,721	644,819	758,956
생산증가액	49	282	537	290	126	397	584
소득증가액	22	123	235	127	55	173	255
추가 GDP 증가율(%)	0.0009	0.0043	0.0027	0.0026	0.0022	0.0058	0.0072
FTA비체결시 실질 GDP	10,367,950	11,503,278	12,762,928	11,544,719	10,803,310	11,986,311	13,298,855
FTA 체결시 실질 GDP	10,368,040	11,503,767	12,763,808	11,545,205	10,803,538	11,986,985	13,299,790
GDP증가액	90	489	880	486	228	674	935

주 1) 소득증가액은 생산증가액에 통신부문 부가가치율(43.7%)을 곱하여 산출

2) 2007년 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453,037억원.

3) FTA비체결시 실질생산액 및 실질GDP는 기존 생산증가율 및 GDP증가율 가정치에 근거해 도출하였으며, FTA체결시 생산액 및 GDP는 기존 생산 증가율 및 GDP 증가율에 FTA에 따른 추가적인 증가 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함.

4)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은 한EU FTA 발효이후 유예기간 2년 적용. FTA에 따른 균형이행기간은 10년 소요가정. 따라서 FTA발효 후 초기 2년 및 균형이행기간(10년) 이후 3년간은 FTA에 따른 추가적 증가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라. 금융

1) 협상 주요결과

- 한·EU FTA 협상시 EU는 금융서비스 중에서 자산운용업과, 보험업, 외환 중개업 부문에서 적극적인 개방을 요청하였으나 한·미 FTA에서 합의된 선에 부응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완료

[표 34] 한·EU FTA 금융 분야 협상의 주요 결과

구분	개요		주요 내용
국경간 거래	상업적 주재 없이 직접 상대방 소비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현재도 허용되어 있는 무역관련 보험서비스, 금융부수서비스에 한해 허용 - 보험부문: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보험 부수업무 허용 -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2년 유예 후 허용
신금융 서비스	상대방 국가에는 있으나 자국에는 없는 금융상품 내지 서비스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은 불허 -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 - 국내 당국이 상품별로 심사해 허가 (열거주의)
금융 감독 및 규제 완화	경제성장, 시장실패의 치유, 금융시장 안정화 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적 개입	정부 권한 확대/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세이프 가드 조치 확보 -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지속
		정부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행정 지도 기능 약화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감독기구의 재량권 인정 - 국책금융기관의 고유영역 인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후선업무 위탁 가능한 범위 내 허용 - 국제적인 수준의 국경간 거래 정보 공유 및 개인금융정보의 보호 - 교차 보복 금지 등

2) 한EU FTA협정의 시사점

- 한EU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관련 개방 조항들은 앞으로 국내 은행의 EU 진출 및 영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최근 국내 은행들은 은행수익을 해외부문에서 많이 올린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 동구권지역으로의 진출 전략도 세우고 있음.
 - 예를 들어 금융위기로 주춤하고는 있으나 신한은행의 경우 한EU 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7년에 이미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권시장 진출 확대계획을 세운 바 있음.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유럽 내 영업 진출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활발한 유럽지역으로의 진출과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금융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영업의 애로사항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채널 구축에 대한 협의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 금융서비스협상에서 우리업계 애로해소 채널 확보 차원에서 현재 미국에서 영업중이거나 향후 진출할 우리 금융기관이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기 협의 채널에 대해 합의한 사항들을 EU측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EU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 금융 개방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관련하여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인 국경 간 거래를 보면 추가 개방 대상이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는 보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금융부수 서비스에 국한됨.

- 그러나 금융개방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지의 여부는 개방 당사국의 수용능력(absorptive capacity)에 의해 좌우되므로 앞으로 금융부문의 발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합의사항들은 향후 중국, 일본 등과 진행될 FTA 협상에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
- 한·EU FTA 금융협상이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간 제도 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서는 일부 법·규제의 정비가 예상되고 규제의 전반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국경 간 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 마련으로 건전성 규제가 가능해지고, 감독 당국 간 정보 교환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한·EU 당국 간 협조가 강화될 것이 예상됨.
 - 금융정보처리 해외 위탁과 관련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허용 기준 및 사후 감독 규정이 제시됨. 이와 관련해서 2년의 유예기간(단, 기타 FTA에서 허용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을 것)을 둔 것은 단계적 개방이라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간주됨.
- 그러나 한·EU FTA 금융협상이 금융개방의 일반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EU FTA가 금융선진화를 가져다주는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한·EU FTA 금융협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EU가 함께 G-20 정상회담에서 추진 중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규제강화 추세를 앞으로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물론 한국과 EU는 이러한 새로운 규제를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 이번 한·EU FTA 금융 부문 협상은 양국의 금융개방 수준이 이미 높은데다가 양국 모두 비교적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견지했기 때문에 추가적 금융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데에는 성공적임. 그러나 제도 개혁이나 역량강화 등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협정에서 보장할 수 없는 것들임.
 -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부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FTA가 금융선진화의 촉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한·EU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보완,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여건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다양한 금융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EU 시장 진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자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 불공정행위 제재 등과 관련하여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 등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 금융개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개방이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 계층의 이해관계와도 합치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금융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특정지역을 금융클러스터(국제금융지구)로 만들어 영어사용·교육·의료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
- 한·EU 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 새로이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으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일부 법개정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마. 법률

1) 협상 주요결과

-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⁷⁾
 - 현재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은 영미계 로펌들이 양분하고 있는 바, 이 부문의 영국계 로펌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 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음. 하지만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이 필요함을 명시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 한미 FTA와 구분되는 점은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외국법자문사의 본국 직명(Home title) 사용이 추가적으로 허용된 점임.
 - 가령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 자격 자격소지자의 공식 직함은 미국법자문사가 되며, 이 경우 해당 미국 변호사가 제공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미국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사업자문 서비스로 간주됨.

 - EU 측은 EU 변호사자격증 소지자의 법률 자문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국의 변호사 직함(프랑스는 avocat, 영국은 solicitor)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음. 우리 측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에서 EU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음.⁸⁾

7) 협정문은 한국이 WTO GATS에 제출한 양허안과 같이 투명성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법률자문가의 한국 내 활동에 대해 한국 법무부의 사전 허가 및 한국변호사협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해당 본국에서의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무소 개설시 법무부와 한국 변호사협회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 사무소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최소 7년 이상의 법률부문 근무경력(원자격국 근무 경력 3년 이상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8) 외국법자문사법('09. 9. 26. 시행) 제27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시장접근/내국민대우 차원의 추가 양허는 아니다.

2) 경제적 효과

-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의 로펌, 특히 영국 로펌의 본격적인 우리나라 진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 EU 역내시장의 통합과정에서 외국시장에 일찌감치 진출한 영국 로펌들이 국내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로펌들의 전문화·대형화 효과 기대
-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법률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편의를 제고
 - 또한 국내 로펌들의 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법률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유럽 로펌들이 합작을 통하여 국내에 진출하게 되므로 국내 로펌들은 선진 법률서비스의 노하우에 대한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어 빠른 경쟁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은 장차 동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으로 인해 지역내 진출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법률서비스 시장 및 국제소송분야에 진출을 위한 준비무대가 될 수 있음.
- 법률시장 개방 효과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법조계의 국제화·전문화 및 고급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충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됨
 - 반면, 최초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혼란 및 영미계 대형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바. 환경

1) 협상 주요결과

- 지속가능한 방식의 자유무역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챕터」 마련
 -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명시화와 환경협력강화를 통한 양국의 환경 질 제고
 - FTA의 이행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 영향평가(SIA :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추진
- 환경서비스시장은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하고 생활하수 처리서비스 분야의 제한적 추가개방 합의
 - 단, 국내 기업의 대응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정부의 폭넓은 규제권한 및 지자체가 직영 또는 민간위탁 여부, 민간 위탁시 구체적인 방법(공개 경쟁, 수의 계약 등) 등 운영방식에 대한 재량권 유보
 - ※ EU는 생활하수 처리서비스를 포함한 환경서비스 대부분을 이미 개방
- 휘발유차 평균 배출량 기준의 경우, 한미 FTA 발효시점부터 MFN(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한미 FTA 합의 내용 적용
 - 한미 FTA 발효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한·미 FTA 합의 내용보다 다소 강화된 평균 배출량 기준 적용

[표 35] 한미 FTA 결과와 한EU FTA 결과 비교

수준	한·미 FTA		한·EU FTA	
	대수	적용기준 (NMOG)	대수	적용기준 (NMOG)
LEV	4,500대 이하	0.047g/km	250대 이하	0.047g/km
LEV ~ ULEV 중간	4,500대 초과 ~1만대 이하	0.0369g/km	250대 초과~4천대 이하	0.039g/km
			4천대 초과~1만대 이하	0.030g/km
ULEV	1만대 초과	0.025g/km	1만대 초과	0.025g/km

2) 경제적 효과

① 분석방법 : 산업연관표에 의한 영향 분석

□ 환경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들 중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매우 작음.

○ 환경서비스업은 산업연관표 29개 업종 중 산출액 기준으로 27위, 취업자수 기준으로는 24위에 해당

※ 기존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상 환경서비스가 독자적인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환경서비스 해당 부분을 선정하여 총29개 산업 대분류로 구성된 산업연관표 재작성, 활용

[표 36] 산업연관표 산업분류 및 각 산업의 현황

Code	산업분류	산출액 (백만원)	산출액 순위	총취업자수 (명)	취업자수 순위
A1	농림수산물	39,228,075	20	1,932,136	2
A2	광산물	3,359,841	29	18,854	27
A3	음식료품	68,276,135	10	295,213	16
A4	섬유,가죽제품	44,894,193	16	436,535	12
A5	목재,종이제품	18,520,531	24	107,087	22
A6	인쇄,출판및복제	14,109,992	25	138,262	19
A7	석유,석탄제품	52,105,911	15	14,042	28
A8	화학제품	108,229,898	4	372,985	13
A9	비금속광물제품	23,412,078	23	107,068	23
A10	제1차금속	76,515,180	8	115,995	21
A11	금속제품	28,659,751	22	257,507	17
A12	일반기계	54,120,747	13	323,705	15
A13	전기,전자기기	159,402,554	2	602,327	10
A14	정밀기기	8,028,370	28	61,245	26
A15	수송장비	105,507,433	6	334,802	14
A1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13,311,190	26	127,274	20
A17	전력가스및수도	40,416,956	19	71,742	25
A18	건설	141,046,478	3	1,638,454	4
A19	도소매	79,772,451	7	2,794,488	1
A20	음식점및숙박	53,417,363	14	1,474,418	5
A21	운수및보관	62,335,179	11	935,797	8
A22	통신및방송	43,140,118	17	164,491	18
A23	금융및보험	75,127,296	9	601,777	11
A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77,318,119	1	1,179,314	6
A25	공공행정및국방	57,622,816	12	667,890	9
A26	교육및보건	105,873,733	5	1,806,815	3
A27	사회및기타서비스	42,706,000	18	1,004,540	7
A28	환경서비스	8,864,179	27	80,393	24
A29	기타	35,622,763	21	0	29

② 생산유발효과

- 아래 표의 세로합은 해당 산업에서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의미. 환경서비스는 22위로 그 효과가 매우 미미.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도 타산업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
- 가로합은 전체 산업에서의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 증가할 때 해당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의미. 환경서비스는 27위로 모든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증가해도 환경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

[표 37] 생산유발계수

Code	산업분류	세로합	순위	가로합	순위
A1	농림수산물	1.9470	21	2.3033	14
A2	광산물	1.7974	23	3.8118	4
A3	음식료품	2.4844	14	2.4919	10
A4	섬유,가죽제품	2.7756	11	1.9102	18
A5	목재,종이제품	2.8179	8	2.7987	7
A6	인쇄,출판및복제	2.5867	12	1.4788	23
A7	석유,석탄제품	2.2221	17	3.3373	5
A8	화학제품	2.9519	6	5.1637	2
A9	비금속광물제품	2.5761	13	1.6921	21
A10	제1차금속	3.4387	1	5.4259	1
A11	금속제품	2.8837	7	1.7756	20
A12	일반기계	2.9569	5	2.0702	16
A13	전기,전자기기	2.9904	4	3.0339	6
A14	정밀기기	2.7868	9	1.3596	25
A15	수송장비	3.1358	3	1.9135	17
A1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2.7865	10	1.2041	28
A17	전력가스및수도	2.1169	20	2.4235	11
A18	건설	2.4087	15	1.3632	24
A19	도소매	1.7807	25	2.2847	15
A20	음식점및숙박	2.2954	16	2.4060	12
A21	운수및보관	2.2067	18	2.6587	9
A22	통신및방송	1.7753	26	1.9092	19
A23	금융및보험	1.5701	29	2.7616	8
A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6663	28	4.6138	3
A25	공공행정및국방	1.7749	27	1.0422	29
A26	교육및보건	1.7928	24	1.6079	22
A27	사회및기타서비스	2.1316	19	1.3077	26
A28	환경서비스	1.8003	22	1.2661	27
A29	기타	3.3480	2	2.3907	13

③ 고용유발효과

□ 취업계수는 일정 생산액 당 취업자수를 의미함.

- 환경서비스업의 경우 10억원 생산액 당 9.1명이며 총 취업자수는 약 8만명임.
- 산업전체적으로 보면 10억원 당 49.3명인 농림수산업이 1위로 가장 노동집약적이며 환경서비스는 12위를 기록하여 매우 노동집약적임을 알 수 있음.

[표 38] 산업별 취업계수

Code	산업분류	취업계수 (명/10억원)	총산출액 (백만원)	취업자수 (명)	취업계수 순위
A1	농림수산물	49.3	39,228,075	1,932,136	1
A2	광산물	5.6	3,359,841	18,854	19
A3	음식료품	4.3	68,276,135	295,213	21
A4	섬유,가죽제품	9.7	44,894,193	436,535	10
A5	목재,종이제품	5.8	18,520,531	107,087	18
A6	인쇄,출판및복제	9.8	14,109,992	138,262	9
A7	석유,석탄제품	0.3	52,105,911	14,042	28
A8	화학제품	3.4	108,229,898	372,985	24
A9	비금속광물제품	4.6	23,412,078	107,068	20
A10	제1차금속	1.5	76,515,180	115,995	27
A11	금속제품	9.0	28,659,751	257,507	13
A12	일반기계	6.0	54,120,747	323,705	17
A13	전기,전자기기	3.8	159,402,554	602,327	23
A14	정밀기기	7.6	8,028,370	61,245	15
A15	수송장비	3.2	105,507,433	334,802	25
A1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9.6	13,311,190	127,274	11
A17	전력가스및수도	1.8	40,416,956	71,742	26
A18	건설	11.6	141,046,478	1,638,454	7
A19	도소매	35.0	79,772,451	2,794,488	2
A20	음식점및숙박	27.6	53,417,363	1,474,418	3
A21	운수및보관	15.0	62,335,179	935,797	6
A22	통신및방송	3.8	43,140,118	164,491	22
A23	금융및보험	8.0	75,127,296	601,777	14
A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7	177,318,119	1,179,314	16
A25	공공행정및국방	11.6	57,622,816	667,890	8
A26	교육및보건	17.1	105,873,733	1,806,815	5
A27	사회및기타서비스	23.5	42,706,000	1,004,540	4
A28	환경서비스	9.1	8,864,179	80,393	12
A29	기타	0.0	35,622,763	-	29

□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곱하면 취업유발계수가 도출됨. 아래의 표는 이들 계수의 세로합과 가로합을 제시하고 있음.

- 세로합은 해당산업에서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산업전체에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고용효과를 의미. 가로합은 모든 산업에서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해당산업에 유발하는 고용효과를 의미. 이 모두 각각 22위, 19위로 고용유발효과는 제한적

[표 39]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원)

Code	산업분류	세로합	순위	가로합	순위
A1	농림수산물	60.1	1	113.4	1
A2	광산품	11.4	26	21.4	9
A3	음식료품	34.0	5	10.8	21
A4	섬유,가죽제품	25.6	7	18.6	10
A5	목재,종이제품	22.2	12	16.2	12
A6	인쇄,출판및복제	23.7	9	14.5	15
A7	석유,석탄제품	8.0	29	0.9	28
A8	화학제품	15.7	21	17.8	11
A9	비금속광물제품	16.0	18	7.7	24
A10	제1차금속	12.3	24	8.2	23
A11	금속제품	19.5	15	16.0	13
A12	일반기계	18.4	16	12.4	16
A13	전기,전자기기	15.9	19	11.5	20
A14	정밀기기	21.2	14	10.4	22
A15	수송장비	15.8	20	6.1	26
A1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22.9	11	11.5	18
A17	전력가스및수도	8.3	28	4.3	27
A18	건설	21.3	13	15.8	14
A19	도소매	42.0	3	80.0	2
A20	음식점및숙박	45.2	2	66.4	3
A21	운수및보관	23.8	8	39.9	4
A22	통신및방송	9.8	27	7.3	25
A23	금융및보험	12.9	23	22.1	8
A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2.1	25	30.7	6
A25	공공행정및국방	18.2	17	12.1	17
A26	교육및보건	23.5	10	27.4	7
A27	사회및기타서비스	33.0	6	30.8	5
A28	환경서비스	15.1	22	11.5	19
A29	기타	37.8	4	0.0	29
	전산업평균	22.3		22.3	

④ 결론

- 환경서비스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이에 따라 환경서비스업에 대한 최종수요 변화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도 매우 작음

- 따라서 환경서비스업의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타 산업과 경제 전체적으로 받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한미 FTA 보다 추가 개방한 하수처리 서비스는 사후처리 환경서비스 분야로, 한국의 기술수준은 2004년 기준 선진국의 80%수준에 달하며, 2013년에는 선진국과 유사한 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 동안 하수처리 서비스분야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시장개방을 통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봄

- 아울러, 설비건설과 운영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공급되는 시장 특성상, 외국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비 운영노하우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피하며, 제한된 국내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이 국내 해당부문의 생산, 고용,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환경부와 KIEP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시장개방이 국내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기업과 협업을 통한 선진기술 획득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시 : 2007년 11월, 대상 : 토양오염복원 및 환경컨설팅 관련 업체 40곳,
「한-EU FTA 및 DDA 환경서비스협상 대응방안 연구용역」

3) 환경 파급효과

- 한EU FTA의 환경오염 유발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하나 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환경오염 유발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와 EU의 산업별 경쟁력 차이 및 업종별 생산량당 오염물질 배출원단위 차이에 따른 결과로 우리나라는 EU보다 경쟁력이 약한 음식료 가공업, 금속제품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디지털 전자업종, 섬유 및 자동차 업종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질오염물질배출원단위가 월등하게 큰 음식료 가공업의 생산량 감소로 BOD 배출량 감소, 자동차, 섬유 등의 생산량 증가 효과를 상회하는 비철금속 및 금속제품의 생산감소 효과에 따른 산업 폐기물 감소 등 전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40] 한EU FTA 환경적 파급효과

(단위: ton(%))

관세 감축 비율	BOD	NOx	PM10	Industrial waste
100%	-11,386 (-0.807)	-550 (-0.125)	-48 (-0.150)	-83,797 (-0.404)
50%	-5,639.53	-275.15	-24.05	-41,897.73

- ※ FTA 전후 우리나라 실질생산량 변화값과 오염배출원단위를 이용하여 계산
- ※ 배출원단위는 수질오염물질(BOD)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관리기술 평가기술 연구(2004), 대기오염물질(NOx, PM10)과 산업폐기물은 환경부의 환경경제 통합계정 연구(2006) 활용

5. 보건 산업

가. 한EU FTA 협상 결과

□ 한EU FTA 관세 부문 최종 양허안

- 한국측 관세 양허안은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 차등 철폐
 - 즉시철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품목수 기준으로 85.3%, 3년 이내 조기 철폐 품목을 포함한 비중은 96.4%

[표 41] 관세 양허안 협상 내역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즉시		3년		5년		7년		합 계	
	개수	수입액	개수	수입액	개수	수입액	개수	수입액	개수	수입액
의약품	453	615	39	993	6	62	-	-	498	1,670
의료기기	97	323	22	152	12	149	3	53	134	677
화장품	18	26	13	102	3	128	-	-	34	256
합계	568	964	74	1,247	21	339	3	53	666	2,603
	85.3%	37%	11.1%	47.9%	3.2%	13.0%	0.5%	2.0%		

주: HS Code 2006 기준, 수입액은 2004-2006년 3년 평균

- EU는 전품목 즉시 철폐
- 협상결과 보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협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
 - 한미 FTA 협상시 최대쟁점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협의되지 않았음

나. 경제적 효과

1) 분석 방법

- 대EU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입 가격탄력성을 1997~2006년 한·EU 수출입 실적 자료(HS code 10단위) 기준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품목별 수입 및 수출 가격탄력성과 관세양허안을 활용하여 품목별 “한국의 대 EU 수출 추가 증대 효과” 및 “한국의 대 EU 수입 추가증대 효과”를 추산
 - 연도별 수출입 예상액: 과거 연평균 성장률 적용
 - 가격탄력성: 다중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
 - 각 품목별 관세 인하율 적용
 - 관세인하율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가 제품가격 인하로 100% 이어진다고 가정

2) 분석 결과

① 수출입 영향

- 한 EU FTA가 발효되면 보건산업분야 대EU 수출은 5년 평균 1천6백만 달러 증가하고, 대EU 수입은 5년 평균 1억 1백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건산업 대EU 무역수지는 8천 4백만 달러 추가 적자가 예상
- 의약품 산업의 대 EU 수출 증가 효과는 5년 연평균 1천 1백만달러, 수입 증가 효과는 3천 7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의약품 산업 무역수지 적자 증대분은 연평균 2천 6백만 달러로 예상

□ 의료기기 산업의 대 EU 수출 증가 효과는 5년 연평균 6백만달러, 수입 증가 효과는 3천 1백만 달러로 예상

○ 의료기기 산업 무역 수지 적자 증가 증대분은 2천 6백만 달러로 예상

□ 화장품 산업의 대 EU 수출 증가 효과는 1만달러, 수입 증가 효과는 3천 3백만달러로 예상되었음

○ 화장품 산업 무역 수지 적자 증가 증대분은 3천 3백만 달러로 예상

○ 화장품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 증대분은 1-5년 평균 기간동안에는 보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1-15년 평균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과거 수입 성장률이 화장품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의약품과 의료기기 산업의 수입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각 산업의 연도별 예상 수출입을 추정하는데 과거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였음)

[표 42] 한-EU FTA 추진이 보건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달러)

	수출증가액(A)		수입증가액(B)		무역수지추가발생액(A-B)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의약품	10,679	16,986	36,603	93,671	△25,923	△76,685
의료기기	5,652	16,245	31,440	80,310	△25,788	△64,065
화장품	9	33	32,703	54,045	△32,693	△54,012
합계	16,340	33,264	100,746	228,026	△84,404	△194,762

② 생산 감소액

- 한-EU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산업의 무역 수지 추가 적자분(순수입 추가 증가분)을 국내 최종수요 변화로 간주하면 무역수지 적자 증가로 인한 생산유발액을 추정할 수 있음
 - 2007년 산업연관표의 국산생산유발계수(기본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순수입 증대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친 생산유발액⁹⁾을 구하고 이 가운데 간접유발액(보건산업의 순수입 증가가 타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외하였음
- 한-EU FTA 관세 철폐로 기대되는 보건산업의 생산감소액은 5년 평균 893억원으로 추정됨
 - 보건산업은 관세철폐로 인하여 적자가 증대하게 되어 생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

[표 43] 한-EU FTA 추진이 보건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원)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의약품	△274.2	△811.0
의료기기	△272.7	△677.6
화장품	△345.8	△571.2
합계	△892.7	△2,059.8

9)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각 항목이 유발시킨 각 산업부문의 직·간접 생산유발액을 의미하며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최종수요와 수입의 변동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변화를 계상할 수 있음(한국은행, 2009)

[참고] 한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계량화의 한계

-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제모형은 실제 현실세계의 복잡한 경제현상을 단순화하여 추정한 결과, 실제 실현되는 효과와는 늘 괴리감이 발생하는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측정이 어려운 변수들과 경제외적 요인 등을 배제하고, 주요한 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단순화된 것이기 때문에 고려중인 변수의 영향력이 과대·과소 평가될 수 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의 나타난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어 미래에 발생할 실제 경제적 효과와는 항상 괴리가 발생
- 무역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효과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CGE모형도 경제 내의 모든 주체를 포괄적인 일반균형모형으로서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CGE모형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과 대내외 교역관계 등을 모형화하여 정책의 변화가 일반균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하는 대표적 분석모형으로 정책실험을 위해서 현실 경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많은 가정이 필요
 - 예를 들어, 생산물시장에서의 완전 경쟁과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고 있어, 현실 경제와는 괴리가 존재
- 산업별 효과분석을 위해 이용된 부분균형분석도 유사한 한계를 가짐.
 -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함수형태에서부터 설명변수의 종류와 측정, 결과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기간과 범위 및 정확도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함.
-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및 무역흐름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CGE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지표와 교역자료 이외에도 산업 연관표를 포함한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분석시점보다 과거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의 경제 상황과 교역관계를 반영하는데 미흡
 - 부분균형분석도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결론이므로 경제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하의 경제모형에 기초하여 수치화된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는 분석모형과 분석과정에 사용된 다양한 가정과 그것이 지는 한계를 감안할 때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그 방향성과 정책 사이의 상대적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